

資 料

鑛物採取規定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내에서의 광물채굴의 허가 및 광업권설정의 협의에 관한 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허가제한지역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광물채굴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광업권 설정에 관한 협의에 있어 동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금, 석탄, 중석, 동, 철, 연, 아연 등의 주요 전략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대한 영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연보호지역
2. 문화재, 기암괴석, 폭포 및 천연수림지역 기타 주요 경관지역
3. 공원시설 및 집단시설 계획지역
4. 공원 및 그 주변의 도로 공원계획상의 도로, 등산로 또는 수로로부터 관망상 노출이 현저한 지역
5. 철도, 굴착, 토석적재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6. 공해발생 기타 자연경관의 현저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제 3 조 (허가제한 광물) 별표에서 정하는 광물 이외의 광물에 대하여는 채굴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점용 또는 사용제한) 공원구역안에서는 광물의 제련시설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조경사업의 실시) ①공원관리청이 광물의 채굴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경사업 계획서와 사업계획평면도, 조감도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명서를 제출받아 조경사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의 표시
2. 채굴위치 및 방법
3. 조경사업의 기간
4. 조경사업의 규모, 공종, 사업량 및 사업비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조경사업비를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금고에 미리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조경사업비에 갈음할 금액이 예치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공원관리청은 조경사업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즉시 제2항의 예치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사업의 공정이 8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에는 예치금의 50퍼센트를 환급할 수 있다.

④조경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기간내에 조경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

제 6 조 (허가절차 등) ①광물채굴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광산평가조사서(국립지질광물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기타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평가기관, 기술사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매장량, 품위, 연간 추정생산량, 가행연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질광상도, 광구도(6천분의 1) 광업등기부등본 및 다음 사항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광장소 및 채광법에 관한 사항
2. 항내수 및 폐석잔토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광석의 운반에 관한 사항
4. 선광장 및 선광법에 관한 사항
5. 지장목벌채, 광산건축물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원 관리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공업권 설정에 관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원보호구역 등에서의 준용) 이 규칙은 공원보호 구역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에서의 광물채굴허가와 광업권 설정협의를 관하여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國立公園資料 ◆

별 표

광종별	기	준	광종별	기	준
석	연간 30,000톤 이상 생산규모로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연, 아연	연간 정광 2,000톤(Pb ₂ N 각 50%) 이상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연간 정광 2,000톤 이상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금	연간 50kg 이상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석회석	연간 50,000톤 이상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증석	연간 정광 30톤(Wo ₃ 70%) 이상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규석	연간 정광 10,000톤(SiO ₂ 99.5%) 이상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동	연간 정광 1,000톤(Cu 6%) 이상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기타	연간 정광 6,000톤 이상 생산규모이거나 연간 생산액 100,000,000원 이상으로 5년 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철	연간 정광 30,000톤(Fe 56%) 이상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				

* * * *

국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규정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179호
국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규정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76년 8월 26일
건설부장관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학생 및 만7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하거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어린이·학생·군인 및 만6세이하의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어린이·학생·군인 또는 어른 30

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만6세이하의 자.
 7.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등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
- 별표 및 별지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 장 료 금 표

단위 : 원

명칭	입장자구분																
	어	른	군인·학생	어	릴	이	어	른	단	체	군인·학생	단	어	릴	이	단	체
국립공원	100		60	40		80	40		20								

(별지서식)

<p>입 장 권 원 부</p> <p>일련번호 :</p> <p>○○○ 국립공원 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width: 100%;"></div> <p>○○○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장</p>	<p>입 장 권</p> <p>일련번호 :</p> <p>○○○ 국립공원 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width: 100%;"></div> <p>○○○ 국립공원관리사무 소장(인)</p>	<p>국립공원 주요경관 사진 또는 안내도</p>
59.5mm	59.5mm	150mm

95mm

269mm 269mm×95mm(백상지 180g/m²)

7802-4-2

1974. 1. 15 승인

- 비고 : 1. □안에는 어른·어린이·군인·학생·단체의 구분을 큰 글씨로 표시할것.
 2. 경관사진 또는 안내도 이면에는 우편법에 의한 그림엽서 표시를 할 수 있다.
 3. 허용오차 : ±0.5mm

공원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령 제178호

공원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76년 8월 26일

건설부장관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공원목적사용 불능의 기준) 영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공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인위적으로도 영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사태·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으로 지각의 변동이 생긴 경우.

2. 산화 산림병충해·설해·전재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요경관이 훼손 또는 인멸된 경우.
3. 공원의 관리 및 이용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